



행정자치부

행정자치부

수신 수신자 참조

(경유)

제목 고유식별정보 실태조사 관련 자율점검 결과로 제출요청

가. 사회전반에 자율적인 개인정보보호 분위기 확산에 노력해주시는 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.

나.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5만 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고유식별정보*를 처리하는 경우, 분실·도난·유출·위조·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하며, 행정자치부와 전문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는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2년마다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

* 고유식별정보: 주민등록번호, 운전면허번호, 여권번호, 외국인등록번호

※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(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)

※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1조(고유식별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)

다. 위의 규정에 따라 현재 고유식별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관리실태 조사가 시행중에 있으나, 행정자치부에 의해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로 지정된 14개 단체에 가입한 회원사에 대해서는 각 단체 또는 자율규제 전문기관에서 시행하는 자율점검 결과로 해당 관리실태 조사를 대체할 예정입니다.

라. 이에 따라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로 지정된 각 협회 또는 단체는 '17.11.17.까지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을 완료하시어 점검결과*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* 점검결과 : 점검참여 기관 리스트, 참여기관 별 고유식별정보 보유량(건수) 1부.

※ 제출처 : unique@kisa.or.kr / 061-820-1844. 끝.

